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56
------	------

2021. 6. 17.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27일, 강동길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6. 1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강동길 의원)

### 1. 제안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서울 흥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를 최근 지정·고시(2020. 8.28.)하였음.

- 이에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사업 비용 등 출연·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연구개발특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 나.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고시(2020. 8.28)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보조 근거를 신설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나.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이 집적해 있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sup>1)</sup>로 조성하고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홍릉특구”)를 지정함(2020. 8. 28)<sup>2)</sup>.
- 홍릉특구 등에 대해서는 소재한 연구소와 첨단기술기업의 세금과 부담금이 감면<sup>3)</sup>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용적률 완화(녹지구역(연구용지) 4층→7층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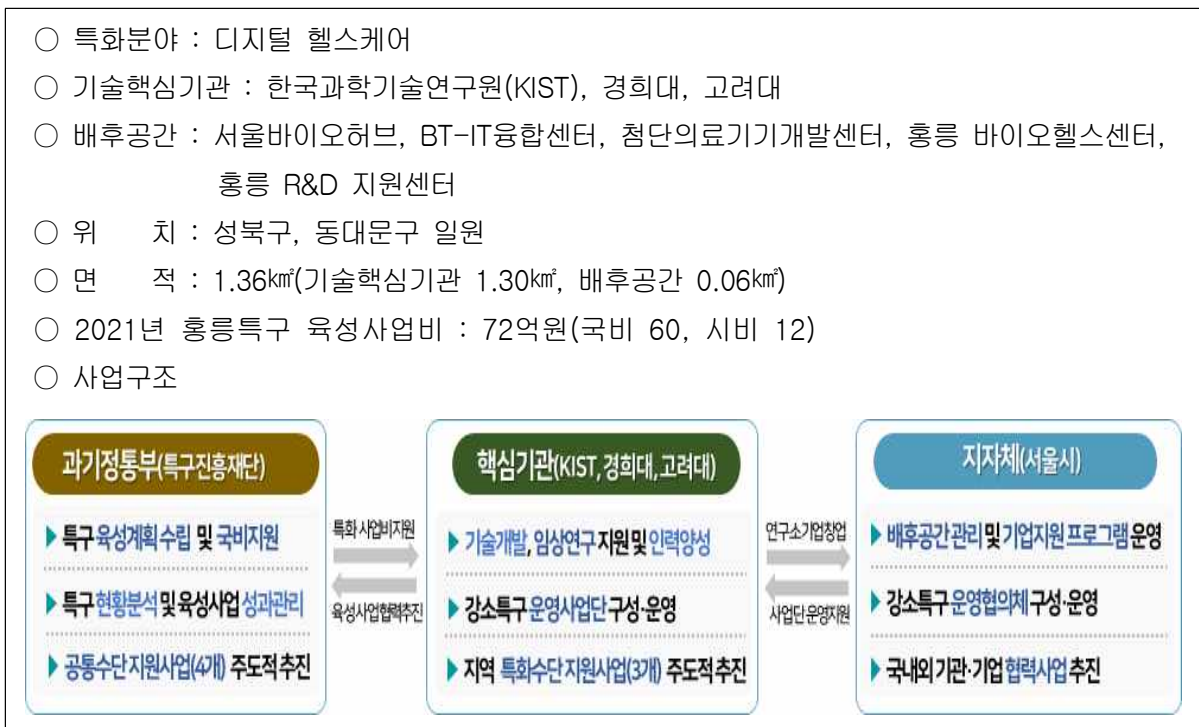
1) 메디클러스터(Medicluster) : 의료산업과 클러스터라는 두가지 개념이 결합된 복합 신조어임.

2) 지역 내 산·학·연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창업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홍릉특구를 포함한 6곳(울주, 구미, 군산, 나주, 천안·아산)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함.

3) 국세(법인세)는 3년 면제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되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7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적용.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홍릉특구는 과기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 기술핵심기관<sup>4)</sup>이 기술개발과 임상연구,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배후공간<sup>5)</sup> 관리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 조성·운영 중인 서울바이오허브, BT-IT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이 기업 보육과 유치를 위한 배후공간으로 지정됨.

###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



- 4) 기술핵심기관 : 공공연구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교육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타기관 4개 유형임.
- 5) 배후공간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함.

## 다. 연구개발특구의 정의(안 제2조 제13호 신설)

- 안 제2조 제13호는 ‘연구개발특구’ 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며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과기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함.
- 최초 연구개발특구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면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총 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 이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의 개정(2018. 5.)으로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육성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가 처음 등장하였고, 2020년 현재 홍릉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구분	광역시	지역	기술핵심기관	특화 분야
‘19년 선정	경남	김해	인제대학교	의생명·의료기기
		창원	한국전기연구원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진주	경상대학교	항공우주 부품·소재
	경북	포항	포항공과대	첨단신소재
	경기	안산	한양대학교	ICT 융복합 부품소재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스마트IT 부품·시스템
‘20년 선정	서울	홍릉	KIST, 경희대, 고려대	디지털 헬스케어
	울산	울주	울산과학기술원	미래형 전지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	스마트 제조 시스템
	전북	군산	군산대학교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전남	나주	한전공대	지능형 태양광·에너지 저장
	충남	천안·아산	자동차부품연구원	차세대 자동차 부품

- 현행 법령에서 강소특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인용해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연구개발특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법효과가 있음.

#### 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안 제18조의2 신설)

- 안 제18조의2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과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연구진흥재단” )’ 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강소특구 사업은 연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 강소특구 소재 12개 지역 중 서울시와 전북을 제외한 10개 특구가 2021년도 특구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억원을 편성하였음<sup>6)</sup>.
- 「연구개발특구법」 제58조의2<sup>7)</sup>에서는 연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강소특구 사업은 과기부와의 협약에 따라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분담해야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출연금 지원 근거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출연을 통해 지역 내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은 물론,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서울시와 정부가 관내에 지정 운영 중인 특구가 현재 25개소<sup>8)</sup>에 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특구사업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담보하고 정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6) 출연금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절차로 의회에 출연동의안 제출이 의무화임.

7)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8) 서울시 및 정부 지정 각 특구현황(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성수IT 등 8개소), 지역특화발전특구(동대문 한방특구 등 13개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영등포, 홍릉·월곡, 성동 3개소), 강소연구개발특구(홍릉 1개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영, 김인호,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이성배,  
이영실,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채유미,  
최 선,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5명)

## 1. 제안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서울 흥릉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최근 지정·고시(2020. 8.28.)하였음.
- 이에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사업 비용 등 출연·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연구개발특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2.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u></p> <p><u>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u></p>

문서번호

2021051800000026

## 비용추계서

요청인 :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5.18

회신일 : 2021.05.24

내용문의 : 02-2180-7943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2. 세부추계내역

-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 6,000,000천원  
= 연간 육성사업비 × 5년  
= 1,200,000천원 × 5년

※ 연간 육성사업비는 '21년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시비) 운영 추경편성 예산안 1,200,000천원 적용([참고]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 운영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참조)

- '21년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및 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계	7,200	6,000	1,200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500	500	-	전문기관연계 우수기술 및 수요기업 발굴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100	100	-	연구소기업 설립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기술이전화사업	2,400	2,400	-	특구기업 대상 R&D 과제 지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500	500	-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 검증, 후속지원 등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250	250	-	지역소재 기업 대상 엑셀러레이팅 지원
혁신네트워크 육성	600	600	-	투자기관, 메디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체 등
지역특화기업 성장지원	1,550	1,550	-	H-TRAIN 상용화 중개연구
	1,200	-	1,200	H-Bridge 기업애로지원
강소기업 해외진출지원	100	100	-	기존특구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 적용

자료 : 서울시 산업거점조성반